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19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조정훈 · 서천호 · 박충권
엄태영 · 윤용근 · 김용태
유상범 · 김대식 · 박형수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출산을 하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난임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체외수정 지원 횟수가 20회로 확대된 이후 실제 20회를 진행한 환자 수는 2022년 332명, 2023년 482명으로 각각 전체 시술환자 대비 0.2%, 0.3%였음. 이는 난임치료가 그 특성상 의도적인 과다시술이 있기 어려움을 보여줌. 그러므로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게 되면, 국가는 적은 재정으로도 난임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의 시술비 지원

1의2.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생 략)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 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 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 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 원을 포함할 수 있다.</u> <u><신 설></u> 2. ~ 4.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 임치료 시술의 시술비 지원</u> 1의2. <u>「한의학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 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 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 라 한다) 비용의 지원</u> 2. ~ 4.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